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22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김영환 · 권철승 · 박용갑  
부승찬 · 한민수 · 허영  
장철민 · 안도걸 · 정일영  
강준현 · 윤종균 · 복기왕  
박상혁 · 이강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이하 “휴면예금등”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해당 금원의 원금은 보전하되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

는 것은 민·상법 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를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을 “출연하기 1개월 전에”로,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을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권리자가 휴면예금등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등은 자활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2장제7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휴면예금등의 지급준비금 등) ① 관리위원회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예금등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도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u>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u></p> <p>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u>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u>출연하기 1개월 전에</u>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u>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u>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p> <p>② ----- ----- -----<u>때에는</u>-----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 ----- -----<u>출연하기 1개월 전에</u>----- ----- -----<u>휴면예금등</u>-----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원권리자가 휴면예금등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등은 자활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45조의2(휴면예금등의 지급준비금 등) ① 관리위원회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6. (생략)

② (생략)

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86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